

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손보 연금형 상해보험, 이중과세 환급 대상 포함

- 연금지급형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, 최근 금융당국은 비슷한 형태의 손해보험상품에 대해서도 이중과세 성격이 있다고 보고 이르면 10월 하순부터 소득세 환급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짐.
 - 일본 재무성과 국세청은 손해보험회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‘연금지급형 적립 상해보험상품’ 중 일부가 이중과세 요소가 있는 것으로 결론짓고, 최근 일본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소득세 환급과 관련한 협조공문을 발송함.
 - 손해보험회사의 상품이 이중과세로 판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세청은 생명보험*과 마찬가지로 소득세 환급 절차를 이르면 10월 하순에 시작하는 방향으로 유관기관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짐.*

* 키리위클리 해외금융뉴스(2010.7.19) ‘연금보험 이중과세 판결, 생보업계 대책 마련 부심’ 편 참조

- 이번 연금형 상해보험의 이중과세 판정으로 소득세 환급대상 상품의 계약건수는 최대 20만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, 금융당국의 환급대상 확대 방침으로 연금형 상품에 대한 이중과세 파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.
 - 연금지급형 적립 상해보험은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원금 이상의 보험금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, 금융당국에 의해 올해 7월 대법원 판결로 이중과세로 인정된 연금지급형 생명보험 상품처럼 상속세와 소득세가 동시에 과세된 것으로 최종 판단됨.
 - 환급대상 보험가입 건수가 최대 약 20만 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, 개인연금보험과 학자금보험이 이중과세에 대한 추가 환급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 환급 대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.
 - 또한 5년 이상의 보험상품에 대해서도 노다 재무장관은 법적으로 반환대상이 아니지만 추가적인 입법 조치를 통해 해당 상품에 가입한 대부분의 계약자들이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조치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중과세에 따른 보험업계에 미칠 파장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됨.

(FujiSankei Business I, 9/14)